제29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 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9. 1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 9월 19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2 - 67

나. 발 의 자: 김지수 의원 외 12명

다. 발의일자: 2022년 8월 17일

라.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강서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 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과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 삭제 (안 제9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제19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본예산 편성 필요

다.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8. 30. ~ 9. 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특별시 보훈수당¹⁾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1) 서울특별시 보훈수당 지급현황

○ 참전명예수당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

-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유족 등 승계불가)로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 지급금액: 월 10만원

- 지급대상: 2,309명 [2022년 8월 기준]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근거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 지급금액: 월 10만원

- 지급대상: 512명(기초생활수급자:393명, 차상위계층: 119명) [2022년 8월 기준]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9조의 3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 자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중복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종합의견

○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이에 우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2018년 7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우리 구 보훈수당 지원 현황

1. 위문금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급대상: 생활지원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단체의 의뢰를 받은 자
- 지급금액 및 시기: 2만원, 연 3회(설, 보훈의 달, 추석)
- 지급인원: 설(1,812명)/ 보훈의 달(1,773명)
- 2022년 예산액: 138,000천원

2. 사망위로금

- 근거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 지급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강서구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 중 사망자
- 지급금액 및 인원: 20만원 지급(1회)/ 54명(2022년)
- 2022년 예산액: 36,000천원

3. 보훈예우수당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서구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급제외: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 지급금액 및 인원: 월50,000원 / 2,586명(2022년 8월 기준)
- 2022년 예산액: 2,100,000천원

-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지급 대상자의 기준이 "강서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로 규정된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거주기간 및 나이 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실시(2021.09.17.)하고, 관련 예산을 600,000천원 증액한 바 있으며,
- 보훈예우수당 관련 서울시 타 자치구 현황²⁾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의 제외기준 및 중복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수당의 지급대상 자를 확대하는 추세임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했으나, 현행 중복지원 제한으로 인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됨

2) 자치구별 중복금지조항 포함 여부

연번	중복금지 조항	해당 자치구	비고
1	삭제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8구
2	유지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15구
3	없음	동대문구, 구로구	2구

[2022.8월 기준 / 참고: 서울시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 현황]

○ 다만 우리 구는 이미 2022년 본예산 기준 세출의 59.31%(6,862억 1,169만 8천원)가 사회복지 분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는 구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액에 대한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세 부 내 역	비고
2023년	3,534,000	- 국가유공자 위문금 20,000원×3회×2,300명 = 138,000천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180명 = 36,000천원 - 보훈예우수당 50,000원×5,600명×12월 = 3,360,000천원	
2022년 2,274,000		 국가유공자 위문금 20,000원×3회×2,300명 = 138,000천원 사망위로금 200,000원×180명 = 36,000천원 보훈예우수당 50,000원×3,500명×12월 = 2,100,000천원 	
증 액	1,260,000	* 증액사유: 서울시 수당 중복지급 허용 - 참전명예수당(2,400명) - 생활보조수당(500명)	

참고

서울시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 현황

(2022. 8월 기준)

연번	자치구명	지급금액	거주기간 제한	중복금지 삭제여부
			기구기간 제원	
1	용산구	5만원	_	0
2	성동구	5만원	_	0
3	광진구	5만원	_	0
4	중랑구	3만원	_	0
5	금천구	3만원	_	0
6	영등포구	4만원	_	0
7	송파구	5만원	_	0
8	강동구	5만원	1개월	0
9	종로구	5만원	1년	X
10	중 구	7만원	3개월	X
11	성북구	3만원	3개월	X
12	강북구	2만원	3개월	X
13	도봉구	2만원	1년	X
14	노원구	3만원	_	X
15	은평구	4만원	3개월	X
16	서대문구	2만원	-	X
17	마포구	4만원	3개월	X
18	양천구	5만원	-	X
19	강서구	5만원	-	Х
20	동작구	3만원	-	Х
21	관악구	4만원	-	X
22	서초구	7만원	-	X
23	강남구	8만원	_	X
24	동대문구	5만원	_	중복금지 조항 없음
25	구로구	5만원	_	중복금지 조항 없음

참고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 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 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